

1. 법의 의의와 구조

1. 사회규범에 대한 이해

사회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준칙: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1) 사회규범의 종류와 성격

사회규범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습: 오랜 세월 반복으로 인한 사회적 행위의 기준으로 인정된 것 도덕: 양심을 바탕으로 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가치기준 종교규범: 종교계율이 사회구성원의 행위기준으로 인정된 것 법: 국가가 공식적으로 제도화 시켜 놓은 명시적 규범
사회규범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바탕 당위의 법칙 그 사회와 시대의 가치관이나 사회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음 단순성 → 복잡성 인구 증가, 국가의 역할 확대 → 법의 역할 강조(강제성)
법의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편성: 시간과 공간의 초월 변동성: 사회변화에 따른 법의 변화 상대성: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하며, 각각의 법은 나름의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강제성: 다른 사회규범과 달리 국가의 강제적 제재가 가해진다.

(2) 도덕과 법의 특징

도덕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의 실현 내면적 양심과 동기를 중시함 일면성(의무만 규율) 비강제성(국가 권력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음) 자율성을 지니므로 스스로 지킬 것을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실현 인간의 외면성 규율 양면성을 지님 (권리와 의무 동시 규율) 강제성 (위반시 국가권력에 의해 제재) 타율성을 지니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행위 원칙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①의미: 도덕적 행위(윤리적인 문제)를 법으로 규제

→ 본인의 위험에 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위험을 구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행위를 법으로 규제함 (예: 불이 난 이웃을 도와주지 않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 : 구조불이행 처벌 / 도덕적 부분 - 법적 강제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법문화에서 볼 수 있는 규범

②찬성: 인간 도덕성의 한계 → 양심에 호소해야 소용이 없음

③반대: 도덕적 행위를 법으로 처벌할 수 없음 → 도덕의 자율성 침해 -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

◇법의 특성

1)강제성: 행위를 국가 권력이 강제함

2)상대성: 법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름

→절대성: 그 법이 시행되는 사회에서는 그 법은 보편성을 추구함

2. 법의 분류

◇사회법의 등장 배경

빈부격차, 기업의 집중과 독과점 폐해, 공해 - 사회적 갈등 : 개인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 보장 - 독점자본주의의 폐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등장: 사회법(예: 바이마르 헌법-인간다운

생활 규정)

㉔ 경제적 약자와 강자의 대립, 사회적 불균형 - 자유주의적국가관에 대한 반성, 개인의 생존 보장의 필요성

㉕ 사법과 공법의 중간 영역

㉖ 사법의 재산권 절대자유 원칙, 계약자유 원칙 - 공법상의 제한: 권리의 공공성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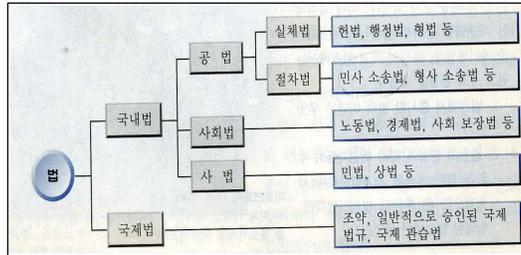
㉗ 경제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남녀평등고용법

㉘ 20 C에 나타난 법 영역, 사법영역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㉙ 국민복지, 공공복리 증진, 실질적 평등의 지향

법의 분류	<p>자연법 - 보편성, 선형적, 정의</p> <p>실정법 - 성문법: 절차, 조문 중심 불문법: 관습법, 판례법, 조리</p> <p>◆자연법의 반대는 실정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문법(문서화)과 불문법(관습법, 판례법, 조리) 사회법: 자본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 사법과 공법의 조화 / 사법의 공법화 현상 / 제3의 법 영역/중간자적인 법 영역 -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 실체법(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자체를 규정)과 절차법(권리와 의무의 실현 수단, 방법의 규율 - 민사, 형사, 행정소송법) 일반법과 특별법(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한정됨 : 특별법 우선의 원칙)
자연법론과 실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법: 자연의 질서,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 보편질서 / 시공을 초월, 불변성, 정의를 중시함 / 근대에서 강조, 인간의 기본권을 천부적 권리로 인정 - 시민단체들의 불복종 운동은 실정법이 자연법 또는 사회계약에 어긋나는 경우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 가능함 실정법: 성문법+현실적으로 행해지는 불문법 / 특정한 시간, 공간에서만 효력 발생(상대성) / 현대에서 강조, 법에 의한 기본적 제한이 가능하고 불복 <p>※ 제정주체에 의한 분류이며 상호 보완적 관계 자연법=정의, 자연법은 법이 아니다 - 법실증주의자의 견해</p> <p>◆자연법은 인간과 사물의 본성에 근거하는 법이므로 보편타당성을 가지며 실정법의 바탕이 된다. 실정법이란 실제 제정되어 실현되고 있는 법으로 사회적 타당성과 상대성을 가진다. 자연법의 정신은 실정법을 통해 실현되며 실정법의 내용은 자연법에 근거한다. 실정법이 자연법에 위배되면 악법이 된다.</p>

※ 성문법과 불문법: 성문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됨, 불문법은 성문법의 보완적 기능을 담당(불문법의 보충성)



3. 법 적용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실정법상의 상위의 법규는 하위의 법규에 우월하다
특별법우선의 원칙	특정한 사람, 사물, 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 적용일반법에 우선 적용된다. : 상법, 교육공무원법, 군형법 등
신법우선의 원칙	새로운 법령의 제정, 개정시 구법에 우선한다. 충돌된 법이 상위법, 특별법 일 때는 적용되지 않음
법률불소급의 원칙	기득권의 존중, 법적 안정성

4. 여러 가지 법 격언들

“강제력이 없는 법은 타지 않는 불이요, 비치지 않는 등불이다.” (에링) - 법의 강제성을 표현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 -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의식이 없는 자는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의미: 시효제도와 관계있음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해하지 않는다.” - 권리자는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뜻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지만 오늘날에는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로 수정 됨

5. 법의 이념

<법 이념의 발전 과정>

◆근대 절대왕정시기: 법이 국가 목적 달성의 도구 - 합목적성의 강조

◆시민혁명이후 : 사회계약, 자연법사상 중심 - 정의

◆19세기 이후 : 법실증주의의 대두, 자연법 부정, 실정법 출현 - 법적안정성

(1)정의: 평등, 공정, 인권존중의 의미

의미	· 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이념 - 절대적 가치를 지님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
학자들의 견해	· 율피아누스: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주려는 항구적인 의지” · 아리스토텔레스: 정의 = 평등 ①평균적 정의(형식적 평등) - 절대적 평등을 요구: 모든 인간을 무조건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 ②배분적 정의(실질적 평등) - 능력과 공헌도에 따른 차등 대우: 상대적 평등
법언	· “세상이 망해도 정의는 세워라” · “정의만이 통치의 기초다.”

(2)합목적성

의미	· 목적에 맞도록 방향을 설정 하는 것 · 법은 시대와 사회가 바람직하가도 여기는 가치 또는 기준에 부합하는 성격을 지녀야 한다.
가치기준의 차이	· 근대초기의 자유방임주의 시대: 개인의 자유보장에 최대의 가치 부여 · 전체주의시대: 개인보다 국가와 민족을 강조 · 현대복지국가: 개인의 이익+사회공공복리 중시 · 상대성, 지배적가치관반영, 이데올로기 반영 ※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가치나 기준의 내용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다.
법언	·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 · “민심이 천심이다.” ·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

(3)법적 안정성

◇ 시효제도 - 법의 이념 중 정의를 희생하여 법적안정성을 기하는 제도

공소시효: 일정기간이 지나면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 할 수 없다.

소멸시효: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

취득시효: 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하는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의미	· 사회생활이 법에 의해 보호 또는 보장 되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 현재의 법 생활 상태 그대로를 중시함 · 법적안정성이 높다는 것은 현행 법질서를 믿고 중요 없이 믿고 안심하게 살고 있다는 뜻
요건	· 법이 함부로 변동 되는 일이 없어야 함 ·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함 · 법이 실제로 실현 가능해야 함 ·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 되어야 함
법언	· “악법도 법이다.” · “법의 목적은 평화이다.” ·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이다.” · “정의롭지 못한 법도 무질서 보다는 낫다.”

◇ 법이념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합목적성과 법적안정성을 중시하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의를 가장 우선시함

2. 법의 일반원칙과 법의 적용

1. 법치주의의 이해

(1)법치주의의 의미와 목적

의미	국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 할 때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리 →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말함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지배’ 를 의미함
목적	· 인간에 의한 자의적인 지배 거부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음
특징	· 권력분립을 제도적 기초로 삼는다. ※ 국가권력 남용 통제장치 : 권력분립제도, 헌법재판제도, 행정재판제도, 탄핵제도, 성거제도, 사법권의 독립, 저항권의 인정 등
우리헌법에 나타난 법치주의	· 제10조: 행복추구권 ·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제12조1항: 신체의 자유

(2)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구분

형식적법치주의 (18세기)	실질적법치주의 (20세기)
의미: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 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 - 통치행위를 단순히 법에 따랐는지 아닌지에 대한 형식적인 면만 대상으로 판단	의미: 법률의 목적 내용까지도 정의에 합치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이념 → 인간의 존엄,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중시하는 통치 권리
· 행정과 재판 → 법률에 적합하도록 행해질 것을 요구: 법률의 목적, 내용을 문제 삼지 아니하는 원리 ·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 → 정당성 무시 · 법률만능주의, 법에 기초한 합법적 독재 가능(히틀러의 수권법, 박정희의 유신헌법 등)	· 합법성(형식) 및 정당성(목적, 내용)을 동시에 강조 ·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사법적 권리 구제 제도가 완비되어야 함 · 실질적 법치주의에서의 권력 통제장치 : 권력분립, 헌법재판, 행정재판, 탄핵, 선거, 의회제도, 언론출판집회, 결사의자유, 저항권,

◆형식적법치주의: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목적, 내용은 문제 삼지 않는다. - 법률만능주의

2. 신의 성실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1)신의성실의 원칙: 법률관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행위 할 의무: 어긋난 법률행위 - 무효

신의성실의 의미	사회공동체의 한사람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 하는 것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행사나 의무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
우리민법규정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2조①항)고 규정

(2)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 권리를 남용한 경우에는 법적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자기에게 특별한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손해, 고통을 주려는 경우

의미	외형적으로는 권리행사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리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행위 →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에 반하는 것
권리남용금지 원칙	·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 권리남용이 됨 ·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으며 권리남용을 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우리 민법 규정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법제2조②항)

◇ 권리남용금지와의 신의 성실 원칙의 관계 : 권리남용금지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파생 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해하지 않는다.”
- 권리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해야하며 남용하지 못한다. : 권리 남용을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신의 성실의 원칙

상대방의 무지를 이용하여 신뢰를 배반하고 부당한 요금을 징수한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배

1. 고객의 입장에서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본질적 권리의 제한
3. 계약거래의 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4. 계약의 실현이 불가능 한 경우

◇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 생활 : 사회계약론

계약을 통한 국가의 구성-자유, 평등의 제도적 보장

1. 자연 및 자연법사상에 기초를 둔 17~18세기 시민 혁명기의 사회 정치 이론
2. 국가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기원을 “인민의 동의”에서 구함
3. 권력 설정의 목적을 개인의 권리와 자유 및 재산권 수호에 둔다는 이론
4. 서양국가 이론의 토대
5. 국가는 사회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산물
6. 국가가 없는 상태: 자연 상태(천부인권의 보장 여부: 재산, 자유, 생명 -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 - 조정을 위해 자연권의 일부를 국가에 이양

학자	자연상태	계약	바람직한 국가 형태	사회상태	공통점
홉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인간은 서로가 늑대)=약육강식의 투쟁상태	자연 권의 전면적인 양도	군주제 (각개인 의 자연 권 포기)	국왕의 통치에 절대 복종 -평화 안전기대 혁명은 절대불가	
로크	권리의 보장 불확실(인간관계가 확대 됨에 따라 자연 권 유지가 불완전함)	국가 또는 국왕에게 신	입헌 군주제	반항권의 유보 제한 군주 정치 2권분립	국가의 권력이 시민들의 계약에서 유래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국가 권력에 대한 제한론적 성격을 나타냄
루소	이성 도덕 책임감이 미성숙(강자와 약자의 구별이 생기고 불평등 관계의 성립)	공동의 합의로	직접민주정치 자유 획득: 교환설	국민주권의 발동으로 불평등 관계 사회악 시정	

3. 법해석의 분류

추상적인 법 조문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기 위해 그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

유권(공권)해석 <국가기관이 내리는 해석>	의미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의한 해석→공적구속력이 있음
	종류	· 입법해석: 법 조문에 추상적 용어를 정의 내려 두는 것 · 행정해석: 행정기관에 의한 해석 · 사법해석: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해석: 최종적 유권해석
무권(학리)해석 <학자들이 행하는 해석>	의미	학술적인 방법에 의해 법규의 의미 해석→강제력은 없으나 유권해석에 영향을 줌
	종류	· 문리해석: 법규의 문구, 문언을 언어학적 의미에서 해석 · 논리해석: 법규의 문구와 관계없이 논리적으로 추리하여 해석 ※ 확장해석, 축소해석, 반대해석, 당연해석, 유추해석

◆유추해석: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

유권적 판단을 내리는데 구체적 사실과 관계에 적용할 법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입법의 흠결이 있을 경우 유추해석은 그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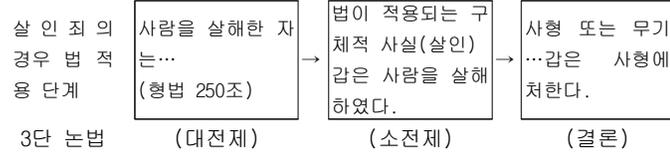
법의 흠결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4. 법의 적용에 대한 이해

(1) 법 적용의 의미와 순서

법 적용의 의미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 했을 때 추상적인 실정법의 어느 규정이 그 사건에 적용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
법 적용의 형식	명문화된 실정법을 대전제로하고 구체적으로 발생한 사건을 소전제로하여 판결하는 것
실제적인 법 적용	사실의 확정(소전제인 구체적 사실을 먼저 확정함) → 관련 법규의 발견(대전제인 관련 법규를 찾아 해석) → 재판

절차: 사실의 확정 → 법규의 발견 → 결론(판결)의 도출



(2) 사실 확정(사건 내용 중 법적가치가 있는 사실만 확정하여 인식하는 것)의 방법

입증	법적 분쟁이나 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유무에 관해 확신을 얻게하는 자료나 증거에 의하여 사실 내용을 확정하는 것
추정 (민법844조 1항)	·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 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 시키는 것 · 사실을 가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기에 이와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반대 증거가 제시되면 추정의 효과는 뒤집어짐
간주(의제)	· 사실여하를 불문하고 법에 기초하여 일정한 사실관계를 확정 시켜버리는 것 · 반증을 가지고도 간주한 효력은 뒤집을 수 없음 ※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제762조)

(3) 추정과 간주의 비교

추 정	간 주
“...로 추정한다.” 는 형식으로 법에 규정 됨	“...으로 본다.” 또는 “...으로 간주한다.” 는 형식으로 법에 규정 됨
반대증거가 제시되면 즉시 번복할 수 있음	간주된 사실을 뒤집기 위해서는 취소에 다른 재판을 거쳐야 하므로 사실을 확정하는 힘은 간주가 추정보다 더 강함
· 동시사망의 추정: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 · 인정사망의 추정: 관공서의 확인을 통해 사망 한 것으로 추정	· 행불5년: 법원의 실종선고판결 →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 → 살아서 나타날 경우 권리(투표권, 재산권, 상속권 등의 행사)를 행사 할 수 없음: 실종선고 취소 재판청구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의 의제로 함(민법제829조)

제 도	내 용	효 력	반증이 발생한 경우
동시사망	2인이 이상이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했을 때 - 상속순위에 중대한 영향	사 망 으 로 추 정	반증만으로 추정을 뒤집을 수 있음
인정사망	사망이 확실시될 때(수난, 화재, 기타 사변 등) - 호적부에 사망 기재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 불명이 일정 기간 계속될 때 - 가정 법원의 선고로 사망 간주 ◆권리능력의 박탈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 망 으 로 간 주 - 사실여부와 관계없음	실종신고는 실종신고 취소 절차가 필요함

3. 권리와 의무

1.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

- ◇사실관계 - 도덕, 종교, 관습(교회에 가는 일, 제사를 지내는 일, 교통질서를 지키는 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
- ◇법률관계 - 법이 규율하는 관계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관계) -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이루어짐

법률관계의 의미	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생활 관계
법률관계의 특징	· 권리와 의무의 대응 관계 ·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음 (예)대리권, 참정권 ·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경우 (예)납세의 의무
법률관계의 변천	· 중세: 신에 대한 의무 강조 · 근대이후: 자유민주주의 발전 → 권리의식과 기본적 인권 중시 - “ <u>신분에서 계약으로</u> ” (의무에서 권리로) · 현대사회: 복지국가 원리의 대두 → 자유에 수반되는 책임 강조, 권리와 의무 함께 중시: 의무와 권리의 중화 - “ <u>계약에서 자유로</u> ”

2.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

- (1)권리: 특정인에게 부여되는 법률상의 힘, 일정한 이익을 누릴수 있도록 법이 인정한 힘
- (2)권리의 종류

의미	공법상 인정된 권리	
공권	종류	· 국가적 공권: 국가가 국민에 대해 가지는 공법상의 권리 - 입법, 사법, 행정권 · 개인적 공권: 국민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권리 - 자유권, 생활권, 정치권, 청구권 등
	의미	사법상 인정 되는 개인 상호간의 권리
사권	종류	· 재산권: 물권, 채권, 지적재산권 등 · 비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등
	사회권	사회법상의 권리: 노동법, 사회보장법 등

- (3)의무(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금지시키는 법률상의 구속)의 종류

공법상 의무	의미	공법상 규율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 것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의무: 재외국민 보호의무, 환경보전 의무 등 · 개인의 의무 · 고전적 의무 - 국방, 납세의 의무 · 현대적 의무 - 근로, 교육, 환경보존, 재산권 행사의 의무
사법상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 ·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 함
사회법상 의무		노동법, 경제법, 사회복지법상에 규정된 의무

권리와 의무의 대응 : 보통, 권리와 의무는 서로 대응(채권, 채무)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경우: 등기의무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권, 취소권

3. 권리와 의무의 주체

(1) 자연인

의미	출생하면서부터 사망하기까지 살아있는 사람
출생시점에 관한 학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태설: 잉태된 시기부터 사람으로 보는 입장 · 진통설: 진통이 시작된 때부터 · 일부노출설: 모체에서 태아의 일부가 노출될 때 · 완전노출설: 민법상 통설 · 독립호흡설: 분리된 후 자신의 폐로 호흡하기 시작할 때
사망시점에 관한 학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사설: 뇌기능의 상실된 때부터 · 심폐기능정지설: 호흡과 심장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시점

(2)법인: 사람(사단법인) 또는 재산의 결합체(재단법인)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인격을 부여한 것 → 자연인에 비해 권리행사의 범위가 좁다.

4. 권리의 객체: 권리행사와 의무 이행의 대상

물권의 객체	동산, 부동산
채권의 객체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 급부
가족권의 객체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지적재산권의 객체	정신적 노무에 의한 산물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 문예, 학술, 미술, 음악
인격권	신체, 명예, 정조

5. 법치국가의 시민상

- ① 법적관심과 법 지식의 습득 요청 - “법의 무지는 용서 되지 않는다.”
- ②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고 법적의무를 성실하게 이행
- ③ 다른 사람의 권리 존중
- ④ 법치주의 실현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

4. 권리 능력과 미성년자의 권리

1.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1) 권리능력

의미	민법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권리능력의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인: 출생(완전노출설) · 법인: 설립 등기
소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인: 사망(심폐기능정지설) - 호흡과 심장박동이 동시에 영구 정지된 시점 · 법인: 설립등기 해지 - 법인은 상속할 수 없다.
태아의 권리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권리능력이 없음 · 예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상속(대습상속, 유증, 유류분 포함) - 태아로서 살아 있을 때 효력 있음

(2) 의사능력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행위와 동기의 결과를 판단하여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임
의사무능력자	젓먹이(영아), 정신병자, 만취자

(3) 행위능력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으로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 자신의 의사 표시로써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성립시킬 수 있는 법률상 자격
행위무능력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낭비벽, 심신미약), 금치산자(심신상실): 가정법원의 선고로 인정, 금치산자의 행위는 언제나 취소 가능
행위무능력자 제도	행위무능력자 본인과 상대방 보호를 위해 행위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

2. 우리 민법상의 행위 무능력자 제도

(1)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법률행위

미성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이루어진 법률행위 → 법정대리인의 , 본인의 취소가 가능 · 성년의제 →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 가능 (단, 공법상에서는 적용 되지 않음)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제한에 대한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부담없는 증여를 받기로 한 계약, 채무면제 계약 · 예외: 단독으로 가능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 ·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행위
한정치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박약자, 가족의 생계를 궁핍하게 하는 자 · 단독으로 법률행위 → 법정대리인의 동의 (동의 없는 행위는 취소 가능)
금치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상실의 상태 · 재산상의 법률행위 → 법정대리인만 가능 (단독으로 한 행위는 취소 가능) · 신분상의 법률행위(혼인, 유언 등) →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행사 가능

(2) 행위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에 대한 보호 장치

무능력자의 사실행위	상대방을 속여 밀게 한 경우 → 취소 할 수 없음
최고권 행사	행위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취소의 확정 촉구 가능
철회권 행사	무능력자와 체결한 계약 →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철회 할 수 있음
거절권 행사	무능력자의 단독행위 → 거절 할 수 있음

3. 여러 가지 능력의 비교

무 효	취 소
특정인의 주장이 필요 없이 당연히 효력 있음	특정인의 주장(취소행위)이 있어야 효력 없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	취소 없는 동안은 효력 있는 것으로 취급
그대로 두어도 효력이 없는 것이 변함 없음	그대로 두면 유효임

◇법정대리인: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을 갖게 되는 자 (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후견인: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 관리권을 행사 할 수 없을 때,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가 있을 때 →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위로 결정

구분	의의	귀속자	결여시 효과
권리능력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자연인, 법인	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없음
의사능력	자기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별 할 수 있는 정신 능력	구체적, 개별적 판단	법률행위의 무효 (젓먹이 만취자, 정신병자 등)
행위능력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제외한 자연인	법률행위를 취소 할 수 있음 무효-효력이 없는 것 취소-장정적 유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능력	자기의 불법한 행위가 법률상의 책임을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만14세 이상의 미성년자 (형법) - 개별적으로 판단	불법행위 책임 부담이 없음 - 감독의무자의 책임

<미성년자의 법령별 연령 기준>

	연령기준	특 징
민법	만20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형법	만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 책임성이 없어 처벌면제
소년법	만19세 미만	소년법 특별취급
근로기준법	만15세 미만	고용금지
	만15세이상 20세 미만	부모동의: 직접근로계약 체결 근로기준시간1일7시간 주35시간
청소년보호법	만19세 미만	흡연 음주 금지
주민등록법	만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 군 지원 입대
도로교통법	만18세이상	자동차 운전 면허

<미성년자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연령	내용	관련법
14세 이상	형사 책임능력 있음(형사처벌 가능) 소년법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님 - 전과자가 되지 않음	형법
15세 미만	취업제한(취업인허증 소지자는 취업 가능)	근로기준법
16세 이상	부모의 동의를 얻어 약혼 혼인 가능(여자)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증인출석 가능, 헌혈가능	민법 도로교통법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 군 지원입대, 단독유언 가능	주민등록법 병역법
18세 이상	부모의 동의를 얻어 약혼, 혼인 가능 자동차 운전면허 경범죄 적용	민법 도로교통법
19세 이상	징병검사(병역의무자)	병역법
20세 이상	부모의 동의 없이 약혼, 혼인 가능 법률행위가능 선거권행사	민법 헌법

4. 미성년자의 권리 보호

형사보호(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사미성년자(만14세 미만)의 행위는 벌하지 않음 만12세 미만: 보호처분 및 형벌 대상에서 제외 만12세 ~ 만14세 미만: 보호처분 대상(형벌 대상은 아님) 만14 ~ 만20세 미만: 보호처분 및 형벌의 대상 ※ 보호처분: 보호자, 적당한 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 아동복지시설 같은 소년보호 단체에 위탁하는 것/ 소년원에 송치 하는 것 등
근로기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5세 미만 고용 금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체결: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미성년자가 체결(법정대리인 단독체결 불가) 미성년자의 임금 청구: 본인이 청구(법정대리인 대리 수령 불가) 정규근로시간: 1일7시간 이내

◆사용자는 1일 근무시간 및 휴일, 야간근무 불가(단, 노동부 장관의 인가시 가능)

5. 부부간 법률관계

1. 가족법

1)가족이나 친족과 같이 특정한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

2)종류 : 친족법과 상속법

2. 혼인

1)의미 : 부부가 된다는 의사의 합치로서 일종의 계약

2)성립 요건

①실질적 요건

- 남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 혼인 적령에 이르렀을 것
- 근친간 혼인(8촌 이내의 혈족)이 아닐 것
- 중혼(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불가)이 아닐 것

②형식적 요건

법률혼주의	· 법률상 부부로 인정 - 혼인신고에 의한 법률상의 효력
사실혼주의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지 못함 사실혼(혼인의사의 합치 - 부부관계) ≠ 동거

☞ 혼인은 사회제도이며, 적법한 혼인은 법률에 의해 보호됨

혼 인 의 효 과		
변 동 사 항	권 리	의 무
· 친족관계의 발생 · 호적변동 · 성년의제 - 부부생활의 독립성 보장	·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 부부간 계약취소권	· 정조, 동거의 의무 · 협조, 부양의 의무

3.이혼

1)혼인의 해소

①자연적 해소 : 사망 또는 실종 선고

②인위적 해소 : 이혼

2)이혼 : 부부의 생존 중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부부 관계를 해소** → 근대 이후 이혼의 자유 인정

◆부모는 유언으로 부양의 의무를 다한 자녀에게 더 많은 상속분을 남겨 줄 수 있다.

◆관습적으로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것은 일반적이거나 법적인 상속관계에서는 장남이 유리하지 않음 - 전통적 관습 ≠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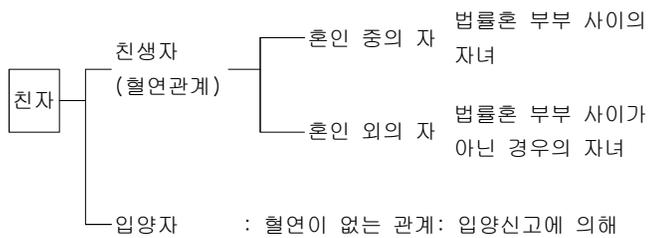
◆부정한 행위를 한 일방은 재판상 이혼청구 불가

◆불임부부가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낳았을 경우 - 친생자 관계는 없다.

합의상 이혼	부부의 합의에 의한 이혼으로 이유나 원인 또는 동기는 묻지 않음 → 가정 법원의 확인 필요(신고서 제출)
재판상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의 판결 을 통해 이혼 →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증명해야 함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 정조를 어겼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 불이행)할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 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때 - 도박, 사이비종교 등
이혼의 효과	1.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의 소멸 ◆양육권과 친권의 소재는 합의에 의해, 아니면 재판을 통해서 2. 자녀 비 양육에 대한 면접교섭권 3. 재산분할청구권 4.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 - 과실로 인한 정신,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6.부모와 자식 간의 법률관계(친자관계)

1.친자 -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2.친권

의미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법적 권리와 의무(신분 재산상의 권리)
친권의 본질	①과거 : 권리 측면 강조 → 지배 통제권이나 부모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권리 ②현재 : 의무 측면 강조 → 자녀의 보호와 양육을 위한 부모의 의무 강조
친권의 내용	· 자녀에 대한 부호와 교양의 권리 및 의무 · 거소 지정권 · 징계권 · 자녀의 재산 관리권 · 대리 및 동의권 등 ◇미성년의 자녀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하여야 함 ◇친권의 행사 ·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 · 부모의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이 행사(면접교섭권) - 친권은 소멸되지 못함 ·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 법원이 정함
친권의 상실	①친권 남용, 현저한 비행,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②법원이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 상실을 선고 ③부부가 이혼의 경우에는 협의로 친권을 정하고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는 면접 교섭권을 가짐(친권남용, 부모의 현저한 비행, 행위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친권을 행사 할 수 없음 - 친족, 검사에 의해 법원에서 결정)

◇ 친족관계와 법률

부양관계	의미	부양 받을 자가 부양 의무자에게 부양청구권의 행사
	종류	· 친자부양 -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노부모 부양의무 · 부부부양 - 상호 동등한 생활수준을 누릴 정도의 생활비 청구 · 친족부양 - 일정 범위의 친족간 부양(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부양 의무자가 부양할 능력과 여력이 있어야 함
친족관계	성립	혼인과 혈연
	친족의 범위	· 배우자 · 혈족 - 8촌 이내 · 인척 -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형제의 처, 고모의부, 자매의 부, 조카의처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자, 백숙부, 중형제, 고모, 고모의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백숙부, 형제의 처, 배우자의 고모, 이모, 또는 자매의 부

◆ 인척이란

- (1) 혈족의 배우자(형제의 처, 고모의 부(夫), 자매의 부(夫), 질의 처, 질녀의 부(夫))
- (2) 배우자의 혈족(배우자 측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자· 백숙부· 중형제· 고모· 고모의 자 등),
- (3)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백숙부· 형제의 처, 배우자의 고모· 이모· 자매의 부 등)를 말한다.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 제769조와 제777조 제2호에서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는 인척의 범위를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였고, **형부와 처제를 인척 2촌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민법 제771조)**

*** 인척이란-** 인척에서 姻(인)이란 혼인할 인자이므로, 인척이란, 혼인으로 인해 맺어진 친척을 말한다.

이 혼인은 나의 혼인은 물론, 내 형제의 혼인 등을 다 포함한다. 따라서, 내가 내 아내와 혼인함으로써, 장인은 나의 인척이 되고, 내 남동생이 제수씨와 결혼함으로써 제수씨가 나와 인척이 된다.

◇ 사돈관계는 인척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소위 겹사돈이 가능하다.)

법적으로는 인척은

배우자(자기의 아내)의 혈족((장인)),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처남의 아내))

혈족(남동생)의 배우자((제수씨)),

(민법 제771조)에 형부와 처제를 인척 2촌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민법 제771조)

7. 상속과 법률관계

1) 상속(자연인에게만 가능 - 법인은 상속의 권한이 없음)

의미	·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정 범위의 친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해주는 재산의 이전 · 적극적 재산(동산, 부동산, 채권, 지적 재산권) · 소극적 재산(채무) : 원하지 않는 경우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음
상속의 대상	①자연인만 상속이 가능하나 태아의 상속권 인정 → 법인의 상속인이 될 수 없음 ②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 부인 → 법률혼의 배우자만 인정(단, 태어난 아이는 상속의 권한 인정)
종류	①유언 상속 : 유언에 따라 상속 → 유류분(상속인을 위해 남겨 두어야 하는 재산의 몫 - 법정 상속분의 1/2, 1/3이다)은 제외 ②법정 상속 : 유언이 없을 때의 상속
법정 상속	①상속인 : 민법이 정하는 일정 범위의 친족과 법률혼의 배우자, 자연인과 태아만 가능 → 법인은 상속인이 될 수 없음 ②균등 분할 상속의 원칙 : 성별, 기혼과 미혼, 호적의 이동(異同), 자연 혈족과 법정 혈족, 동복(同腹)과 이복(異腹)의 차별 부인 ③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함 ④상속 순위 · 1순위 : 직계 비속과 배우자 · 2순위 : 직계 존속과 배우자 · 기타 : 형제자매(3순위), 4촌 이내의 방계 혈족(4순위)

◇ 부도덕한 행위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자격이 박탈된다.

2) 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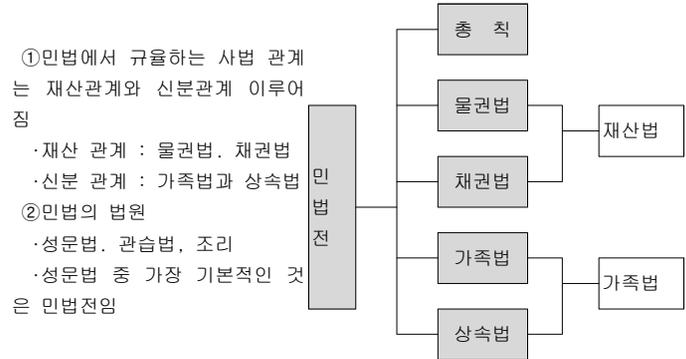
의미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 법률행위 - 유언자의 의견을 존중
요식주의	민법이 정하는 방식에 의해야만 효력이 발생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② 녹음에 의한 유언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효력	①유언자 유언을 할 당시 의사 능력이 있어야 함 → 심신 상실이나 혼수상태에서 유언은 무효임 -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의사 능력 ②유언자는 유언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함 ◇대습상속 : 직계비속이 대신하여 상속하는 제도 - 직계비속 중 사망으로 인해 그의 자식이 있는 경우 대신하여 상속 할 수 있다.

◆법정상속 보다는 유언이 우선한다.

3) 유류분 제도

의미	상속인을 위하여 남겨 두어야 하는 재산의 몫
효과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제3자에게 처분 했을 때 상속인은 자신들의 유류분 주장 가능
유류분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의1/3

5. 민법의 기본원리와 법 문제



1. 민법의 기본 원리 변천

(1)근대민법의 3대원칙: 자유방임주의로 인한 빈부의 격차 발생 -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소유권 절대 원칙)	사유재산권을 존중하여 절대적 지배권을 인정: 절대성 - 국가의 간섭 배제
사적자치의 원칙 (계약자유 원칙)	· 개인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 · 개인 의사 자치의 원칙, 법률 행위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함
과실책임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타인에 기친 손해에 대해 고의,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

근대	*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 사적 자치의 원칙 * 과실 책임의 원칙	자유주의, 개인주의	개인 존중
----	---	------------	-------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모순점 등장 → 경제적 약자들의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 보장 사회구조적문제가 개인의 노력보다 클 때 **국가가 개입** 문제 해결 - 빈부격차, 노사 문제 사회적 약자의 보호

현대	* 소유권 공공의 원칙: 상대성	수정자본, 복지국가	▶단체중심
	* 계약 공정의 원칙		
	* 무과실 책임의 원칙		

(다수의공공이익우선)

(2)현대 민법의 3대원칙: 실질적 자유와 평등의 구현을 위해 노력

소유권 공공의 원칙	소유권은 법에 의해 보장 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제한 될 수 있다는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 지나치게 불공정한 계약 등은 무효로 함 “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민법104조)”
무과실 책임의 원칙	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상황 하에서는 관련 있는 자에게 책임을 부과 하고 있음

※민법의 지도 원리와 그 변화

근대	현대
소유권 절대의 원칙 (= 사유 재산 존중의 원칙)	소유권 공공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2. 물권과 부동산 거래

(1)물권: 물건을 지배 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지배)

물 권 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권: 물건(동산, 부동산)을 직접 지배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 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 · 물권법 :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관계를 규율하는 법 ◆중도금 지불 전에는 계약 해지 가능
물 권 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권: 가장 광범위한 물권(사용가치+교환가치의 지배)으로 사용, 수익, 처분 할 수 있는 권리 · 점유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상태를 보호해주기 위한 권리 · 제한 물권: 물건의 한정 된 면만을 지배 할 수 있는 권리(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 일면만 지배) - 용역물권(사용가치)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담보물권(교환가치) - 유치권, 질권, 저당권 ◆물권은 채권에 우선함
물 권 의 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권의 변동(발생, 변경, 소멸): 공시의 원칙 · 부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 등기 - 부동산의 채권이 물권으로 변동(물권변동의 효과 발생) :공시 원칙을 정한 것은 제3자의 보호와 거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 ·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 등기 · 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 점유 · 동산물권 변동의 공시방법: 인도 ※ 부동산 등기부의 구성 표제부: 부동산의 지번, 면적, 용도 등의 기재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재 을구: 소유권 이외의 저당권, 지상권 등의 기재

- ◆ 중도금 지급이전이라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이중 매매한 경우 형법상 문제가 안 된다.
- ◆부동산의 소유권은 물권으로 등기 - 제3자에게 효력 주장

3. 임대차 및 채권 채무

◆임대차보호법 - 민법의 특별법

임대차 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의 최단기간 2년 · 임대차 등기가 없더라도 주민등록 이전 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음 계약자유 원칙에 제한을 두는 것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상대적 권리) · 채권의 발생과 소멸: 계약을 통해 발생 → 채무자의 변제를 통해 소멸
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부의 요건: 실현가능할 것, 법과 선량한 사회 질서에 위배 되지 않을 것,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결정 일 것 · 채무불이행의 효과: 법원의 판결로 강제 이행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
계약 무효와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무효인 경우 - 실현불가능 한 것을 목적으로 할 때 - 선량한 사회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 계약 내용이 불공정한 경우 - 허위의 의사표시를 기초로 한 경우 · 계약 취소가 가능한 경우 - 착오에 의한 계약 - 사기나 강박에 의한 계약

4.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1)불법행위의 의미와 요건

불법행위의 의미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행위 · 위법성 · 가해자의 고의, 과실 · 가해자의 책임 능력 · 정신적, 재산적 손해 발생 · 가해행위와 발생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성립

(2)손해배상

- 의미: 일정한 행위나 사실에 의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전보하는 것
- 발생원인: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 손해방법: 원칙 - 금전배상원칙
명예훼손시: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내릴 수 있음
후발손해: 교통사고 합의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배상을 인정함
-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재산, 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

(3)특수한 불법행위: 일반불법행위와는 다른 특수한 성립요건이 정해져 있는 불법행위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책임
사용자의 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일정한 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용자가 그 배상을 하는 것(예)자장면 배달사고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	공작물의 설치 도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제1차로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책임을 지되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한 경우 제2차로 소유자가 배상을 책임진다.
동물 점유자의 책임	동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 불법 행위	여러 사람의 공동 불법 해우이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왕따, 집단폭력 등

헌법상의 지위	법 앞에 평등	헌법 제11조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고용 임금 등에서의 평등	헌법 제32조4항 여성의 근로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민법상의 지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규정	친족범위, 친권의 행사, 재산 상속분, 부부재산제, 부부의 공동책임
	근로기준법상의 지위	·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예정된 휴일 근무 시 50%할증 · 도덕, 보건 상 유해 위험한 업종에 종사하지 못함 · 개내 노동 금지 · 모성보호
사회법상의 지위	남녀고용 평등법상의 지위	· 모집 채용상의 평등한 기회제공 · 동일임금, 육아휴직보장 등

4. 소비자의 권리보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 소비자 보호법에서 8대 권리를 선언

안전할 권리	·물품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알 권리	·물품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리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소비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상업 활동 등에 대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 조직 및 활동권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전자상거래시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

1. 사업자의 신원 확인
2. 공짜, 과다경품에 현혹되지 않는다.
3. 배달된 상품을 즉시 확인한다.
4. 총동구매를 자제한다.
5. 피해구제는 서면으로 신속하게 한다.
6. 인터넷 거래 시에는 계약사항을 출력해 둔다.
7. 배달, 반품, 환불 등 거래조건을 체크한다.

5. 근로자의 권리 의무

◇근로자 보호 관련 법률의 등장 배경

산업혁명이후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자본가의 횡포로 인해 근로환경이 사회 갈등의 요인으로 등장함 → 20세기 이후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법률을 제정하여 근로자 보호에 나서게 됨

①노동 기본권 :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근로권(헌법상의 권리)과 노동 3권 → 바이마르 헌법이 노동 기본권 보장의 효시 / 경제민주주의 사회의 실현

②근로권

- 근로의 능력과 의사를 가진 근로자가 근로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국가의 노동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권리
- 헌법 32조 ①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

III 사회생활과 법 (학교, 여성, 소비자, 근로, 환경)

1. 학교교육과 법

의미	교육과 연관이 있는 모든 법 총칭
종류	· 상위법: 헌법 제31조1항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하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육권	· 의미: 학생, 교사,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위해 갖게 되는 권리 ①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 ② 학생의 교육권: 학습권, 자치 활동권 ③ 교사의 교육권: 수업권, 부모의 선택과 의무교육제도, 교육과정 편성권, 교재선택권, 교육방법결정권, 징계권 ④ 학부모의 교육권: 친권

2. 교사와 학생의 권리 의무

교권: 전문직으로서의 교사의 권위와 법률상의 권리

교원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침해 배제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보장

교사의 권리와 의무:

- ① 교육활동에 서의 자율성에 관한 권리
- ② 신분보장에 관한 권리
- ③ 교직원단체 활동권

학생의 권리: 학습권 - 수험권,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자유 선택권, 학생 자치 활동권, 교육기회평등권

3. 여성과 법

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근로자의 권리

노동기본권	근로권=노동권	· 사회적으로 근로 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 구체적 권리가 아님, 상대적 권리
	노동3권	· 단결권 -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 할 수 있는 권리 · 단체교섭권 - 사용자와 교섭 할 수 있는 권리 · 단체행동권 - 쟁의 발생 시 각종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 단체행동의 유형

근로관계법 (노동법)	근로기준법	· 근로조건을 정한 법 · 근로자 보호 · 황건계약 무효 ◇황건계약(yellow-dog contract): 부당노동행위 - 더 좋은 대우 보장 조건 - 노동조합가입을 막고 쟁의 참여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개별적으로 맺는 계약: 해고시 노동위원회에 구조요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노동쟁의 조정 중재 · 근로3권 보장,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

- ◆근로기본권: 근로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3권
- ※정당한 쟁의 행위 : 민사상 · 형사상 책임 면제

<근로자의 단체 행동(노동쟁의) 유형>

유형	내용
파업(strike)	다수의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노동 제공을 거부 하는 행위
태업(sabotage)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의도적으로 작업 능력을 저하시키는 행위
보이코트(boycott)	사용자 또는 그와 거래 관계에 있는 제3자의 상품구입, 시설 이용 등을 거절하거나 그들과의 근로계약을 거절 할 것을 호소하는 행위
피켓팅(picketing)	파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고 근로 희망자들의 사업장 또는 공장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에 협력 할 것을 요구 하는 행위
알선	행정관청 공무원이 쟁의 당사자사이에서 쌍방의 의견전근을 권고 화해 조정시키는 방식
조정	알선이 실패 - 사건이 노동위원회로 이송됐을 때 조정위원회가 행한다. -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중재	관계 당사자가 일방 또는 쌍방에 의하여 (임의 중재) 행정관청이나 노동위원회의 중재로 분쟁 해결 원칙적으로는 임의 중재이나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강제중재가 인정된다.

- ◆쟁의행위의 해결방법(절차)
- 알선 (만남) ⇨ 조정 (노동위에서 협의) ⇨ 중재 (강제성- 법적 구속력 있음)

◇해고 - 근로자에게 책임 정리해고 - 사용자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정리해고의 요건>

-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②사용자 - 해고회피노력(구조조정, 임금삭감, 작업시간단축 등)
- ③합리적, 공정한 기준
- ④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7. 기본권의 보장

1. 기본적 인권의 본질에 대한 이해

◇기본권의 시대적 변천

- ①17, 18세기 초기(시민 혁명) : 자유권
국가로부터의 자유(소극적 형식적 자유) → 인간의 생명, 자유, 재산 등에 대한 권리를 강조한 자유권적 기본권이 중심
- ②19세기 : 참정권
→ 시민 혁명 후 부르주아 계급에 의한 여성과 빈민의 참정권 제한
- ③20세기 : 사회권
→ 생활권적 기본권 강조(국가에 의한 자유, 적극적 실질적 자유 보장)

발전과정	내용	용
국왕과 타협하여 시민의 권리보장 - 국민의 권리	· 영국대헌장(1215), 권리 청원(1628), 인신 보호법(1679), 권리 장전(1689) → 국왕 스스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한계	
천부인권으로서의 기본권 - 개인의 권리	· 미국 버지니아 주 권리 장전, 독립 선언서(1776) → 기본권이 개인의 권리로 인정 · 독립 선언문 :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게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함 · 프랑스 시민혁명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1789) → 기본권이 개인의 권리로 인정, 신민에서 시민으로	
사회적기본권 (생활권) - 사회적약자의 권리	· 독일바이마르 공화국 헌법(1919) → 사회적기본권(생활권)	

- ◆기본권의 본질
- 천부인권 + 실정법

(1)천부인권사상

의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서 부여한 생명, 자유, 재산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천부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상 → 17.8세기 자연법론자, 계몽사상가들이 주장, 사회계약설에 영향
우리 헌법 규정	· 헌법 제10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실정법 사상

의미	기본권은 실정법의 범위 안에서 보장되는 권리에 불과하다는 사상 기본적 인권은 법률을 통해 제한이 가능함을 주장 → 19.20세기 이후 법실증주의자가 주장
우리 헌법 규정	헌법 제37조②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 할 수 있으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 할 수 없다. ◆안보, 질서, 공공복리: 합목적성 ◆법률에 의해 제한: 법적안정성 ◆본질까지 제한 할 수 없다: 정의

2. 기본권 보장의 역사적 변천과 효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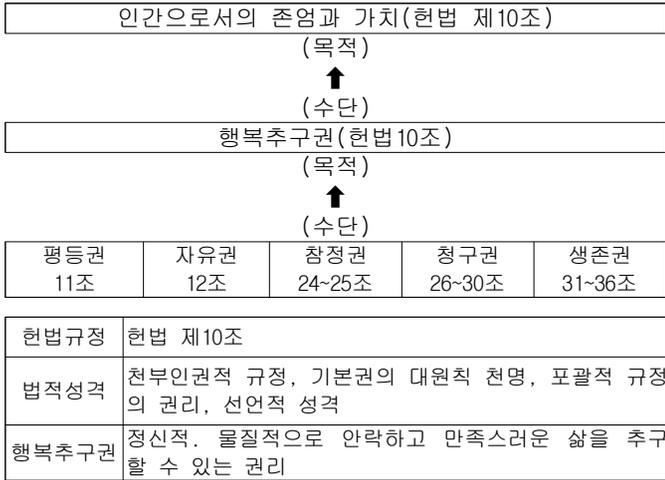
- (1) 역사적 변천
- (2) 기본권의 변천

자유권	참정권	생활권
17,8세기	19세기	20세기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에의 자유	국가에 의한 자유
소극적 권리	능동적 권리	적극적 권리

◆기본권의 효력

- 대국가적 효력 - 입법(기본권 보장에 위배 되는 입법 금지) 행정(기본권을 침해하는 권력행사 금지) 사법(재판 절차나 판결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불가)
- 대사인적 효력 - 개인과 개인 간에는 헌법의 기본전신을 반영한 사법규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작용

3.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자기결정권):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포괄적 기본권 - 일조권, 두발자유화, 채광권 등



자유, 평등, 사회권



청구권적기본권

4. 평등권

- (1) 평등권의 의미와 성격

의미	·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아니 할 권리 ·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성격	· 국가에 대한 공권 · 자연권적 기본권: 입법, 행정, 사법을 구속
내용	· 차별대우 금지, 사회적 특수계급제도 금지, 특권제도 금지 · 교육기회의 균등, 여성근로차 차별 금지 등

- (2) 합리적 차별과 불합리한 차별

◆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차별은 평등권에 위반되지 않음

법 앞의 평등	· 배분적 정의에 입각한 상대적, 비례적, 실질적 평등을 의미 · 개인의 선, 후천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 합리적 차별이 가능함
합리적 차별	· 남자의 병역, 여성의 생리휴가, 여성과 연소자의 근로시간 단축, 야간 근로 금지, 대학입학시 성적에 의한 입학사정, 미성년자 관람 불가, 누범 가중 처벌, 누진세 제도 등
불합리한 차별	· 성별에 따른 차별 · 종교에 따른 차별 ·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5. 자유권적 기본권

- (1) 자유권의 의미와 성격

의미	외부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권리
성격	· 천부인권적 성격: 본질적 권리, 핵심적 권리 · 소극적 권리의 성격: 방어적 성격의 공권, 국가로부터의 자유 · 포괄적 권리: 국민의 자유는 헌법에 열거 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 되지 아니함 → 헌법에 열거 되지 않은 자유도 폭 넓게 보장함

- (2) 자유권의 종류

의의	국민이 국가나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
성격	·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공권 - '국가로부터의 자유' · 절대군주에 항거하여 최초로 획득한 권리임 · 천부인권 성격이 강하여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 임 · 헌법에 열거 되지 않은 자유도 폭넓게 보장 하므로 포괄적인 성격의 권리임
정신적 자유	·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신체의 자유	· 자신의 신체가 외부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 위협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음 · 죄형법정주의 · 적법절차의 원리 · 영장주의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구속적부 심사 제도 · 형벌불소급 / 연좌제 금지 / 미란다 원칙 · 불리한 진술의 거부권 · 일사부재리의 원칙
사회경제적 자유	· 거주이전의 자유 · 직업선택의 자유 · 주거의 자유 ·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 통신의 자유 · 재산권의 자유

6.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의미	국민이 직간접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국가 기관을 구성 할 수 있는 권리	
성격	19세기 이후 강조, 능동적 권리, 국가에의 자유	
종류	국민투표권	· 국가의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권리
	선거권	· 국가 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할 권리(만 20세 이상의 국민)
	피선거권	·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 선출 될 수 있는 권리 · 연령제한 : 대통령(만40세 이상)국회의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만25세 이상) · 제한: 금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선거권이 정지, 상실 된 자
	공무담임권	공무원

<기본권 침해의 구제 방법>

1. 청원제도
2. 법률구조제도 - 상당, 무료변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
3. 행정쟁송제도
4. 헌재를 통한 구제 -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기본권의 성격 비교>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개인주의, 자유주의 법치주의 개인의 권리 구체적 권리		단체주의 사회정의 시민의 권리 추상적 권리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에의 자유	국가에 의한 자유
소극적 권리	능동적 권리	적극적 권리
국가간섭배제	국가 권력 참가	국가 배려 요구

7. 사회권적기본권(생활권) - 제3의법, 중간적 영역의 법, 실정법상의 권리

의미	·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최저한도의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 ·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국가에 대해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 → 복지 국가에서 가장 중시되는 기본권 중의 하나임
성격	· 생존권, 사회권 → 적극적 권리: 사회권적 기본권 · 적극적 권리의 성격: 국가에 의한 자유
종류	①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②근로의 권리 ·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 고용 관계를 계속할 권리 · 직업 선택의 권리 · 국민의 근로 기회의 제공과 인간다운 근로 조건의 확보 · 노동 3권의 보장 :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③교육의 권리 ·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 보호하는 자녀에게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선언 · 평생 교육의 진흥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무교육의 무상화 ④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⑤사회 보장 제도 · 사회 보험 : 전 사회의 연대 책임 하에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다수인의 위험을 분산 → 국민 연금, 건강 보험, 산재 보험, 고용 보험 · 공공 부조 : 국가 재정 부담으로 생활 무능력자 보호 → 생활 보호, 의료 보호

8. 청구권적 기본권

의미	다른 기본권이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성격	· 수단적 성격/적극적 공권 ·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기본권
종류	①청원권 : 국가 기관에 문서 로 자신의 의견을 청원 ②재판 청구권 : 독립된 법원에 의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③형사 보상 청구권 :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 처분 이나 무죄 판결 을 받았을 때 국가나 공공단체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④국가 배상 청구권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나 공공 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⑤범죄 피해자의 국가 구조 청구권 :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

8. 행정법과 행정구제제도

1. 행정이란

(1)행정과 행정법

- ① 행정의 등장: 근대 입헌국가의 권력분립이후
- ② 성격: 공익의 적극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 집행 작용
- ③ 변천:
근대국가 - 치안과 국방 등 '최소한의 행정작용만' 수행
현대국가 - 복지정책의 확대 등으로 '행정조직이나 권한이 확대'

행정의 의미	·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능동적 국가 작용 · 권력분립을 기반으로 함 → 상호견제 및 균형 →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충실한 보호
행정법의 특성	· 여러 행정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일체의 행정작용에 관한 국내 공법임 · 통치적 규정을 포함한 포괄적인 통일법전이 없음 → 수많은 단행법으로 구성 되어 있음

(2)행정기관

행정관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 표시하는 기관 예: 각부 장관
보조기관	행정관청을 보조하는 기관 예: 각부 차관, 국장, 과장 등
자문기관	행정관청의 의사 결정시 자문에 응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기관 예: 부처 내 각종 위원회
집행기관	행정관청의 명령을 받아 실력으로 집행하는 임무를 가진 기관 예: 경찰서, 세무서
감사기관	행정관청의 행정을 감사 예: 감사원

(3) 행정법의 기본 원리

민주행정의 원리	· 의미: 행정에 국민 전체의 이익과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원리 · 특징: 법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 분야에서 선행되어야 할 원리임
법치행정의 원리	· 의미: 위법적인 행정작용은 안되며 법률에 의해서만 행정권이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리 · 특징: 행정이 규제적 기능 (법률로 행정권의 자의적인 발동을 억제하는 기능) ⇨ 유도적 기능 (행정이 수행해야 할 기능)을 부여하고, 그 활동을 촉진으로 전환
복지행정의 원리	· 의미: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 · 사례: 노인복지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실시 등
사법국가의 원리	· 의미: 행정국가주의를 지양하고 행정에 대한 개괄적인 사법심사를 인정한다는 것 · 사례: 행정작용으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사법부가 행정소송을 담당
지방분권의 원리	· 의미: 지방행정은 그 지역 주민의 자치에 의해 실현 한다는 것

2. 행정구제 제도

행정구제의 의미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신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 행정기관이나 법원에서 원상회복, 손해전보, 행정작용의 취소, 변경 등에 나서는 것	
사전적 구제 수단	· 청문 · 민원처리 · 청원 · 옴부즈맨(행정 감찰관)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후적 구제수단	행정쟁송	· 잘못된 행정작용의 취소, 변경을 위해 제기하는 것 · 종류: 행정심판(행정청에 제기) 행정소송(법원에 제기)
	행정상 손해전보	· 행정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재산상 손해 혹은 손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갱여주는 제도 · 종류: 행정상 손해배상(위법 행위시) 행정상 손실보상(적법 행위시)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행정심판: 법률상의 분쟁이 생긴 경우 행정기관이 심리, 재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의를 제기해 보는 것이다. 즉 행정절차이지 사법절차가 아니다.
 행정소송: 법률상의 분쟁에 대해 사법기관인 법원이 판정하는 것

- ◆청문: 행정주체가 의사결정을 할 때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소환하여 그 의견을 듣는 것
- ◆재결정: 재결(옳고 그름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 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 ◆부작위: **작위(作爲)는 곧 어떤 행위를 한다는 뜻입니다.**
 부작위(不作爲)는 곧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이를 하지 아니하

는 것을 말한다.

◇ 행정상 쟁송제도

3. 행정심판제도

의미	행정기관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	
장점	· 사법절차 보다 간편, 행정기관의 전문지식 활용 · 행정기관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시정	
요건	행정상의 처분, 부작위가 이루어진 직접상대방 (예: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자) 또는 심판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 (예: 광산 채굴권 허가를 해중으로 피해를 본 주민)이 있는 자가 청구	
절차	재결정	처분청에 제출 → 처분청 → 재결정(행정심판 청구→수리·재결 - 심의하여 결정을 내리는 일 →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종류	각하: 심판청구 요건이 부적격 하다고 인정 될 때
		기각: 요건은 구비되었으나 이유가 타당치 않을 때
	사정	인용: 청구 내용이 이유 있다 고 받아들이는 결정 사정: 내용은 이유 있으나 공공복리를 고려 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 행정청은 청구인에게 구제방법 강구

4. 행정소송제도

종류	내용	
항고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무효 등의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 즉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당사자 소송	공권력 자체의 위법성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작위, 부작위로 인해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예: 잘못 부과된 세금 반환 청구소송)	
민중소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했을 때 직접 자기의 법률상의 이익과 관계없이 시정을 구하려고 제기 하는 소송	
기관소송: 행정기관 간의 소송	국가나 공공 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재 여부 또는 권한의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	

- ◆항고란 저항하여 소를 올리는 것
- ◆당사자소송은 권리VS 의무의 소송
- ◆민중소송은 국민 누구나 소송할 수 있다.

◇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 손실보상, 손해보상

5. 행정상 손실 보상

의의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침해된 사유재산상의 희생에 대하여 보상해 주는 제도(헌법 제23조2항)
요건	·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 일반적인 사회의 제약을 넘어서 사유재산권의 특별한 희생이 발생해야 함
원칙	· 현금보상 원칙, 예외적으로 현물보상도 가능 · 정당보상의 원칙 , 완전보상주의 · 침해 받은 자가 보상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가능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특허청 관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문화관광부): 사후50년 간 유효

6. 행정상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의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 주는 제도	
배경	근대: 국가무책임의 원칙 -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만 책임이 있다는 사상이 지배적 현대: · 복지국가의 이념 등장: 국민의 권리 보호 필요성 증가 → 국가 책임의 원칙이 확립되었음 · 헌법 제29조	
요건1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	
	공무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직무행위	· 직무행위 자체
	위법성	법을 명령을 위반한 행위
요건2	“공공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	
	공공영조물	도로, 다리 등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물건
	설치 및 관리의 하자	고의, 과실불문(안정성에 흠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하자와 손해 관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7.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차이

구분	손해배상(국가배상) - 개인주의	손실보상 - 단체주의
주요본질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구제	적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구제
발생원인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 공공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사유재산의 특별한 희생 발생(적법한 행위)
보상기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	정당보상, 완전보상
보상내용	재산상, 정신상 손해	재산상 손실

9. 범죄와 형벌, 재판의 원칙과 절차

1. 형법에 대한 이해

(1)형법의 의의

의미	일정한 행위를 법률로 인정하고 범죄자에게 일정한 형벌을 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공법
목적	범죄예방, 범죄자 처벌을 통한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
발달	· 복수시대: 복수 · 속죄시대: 경제적 배상 · 위하시대: 위협 · 박애시대: 최소한의 수단 · 과학시대: 범죄방지 대책

(2)죄형 법정주의

의미	· 몽테스키외의 3권 분립론이 바탕 · 국가 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 행사 억제 →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 국민의 자유와 인권의 보장
20C 이전	· 형식적 죄형법정주의 -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 범죄의 종류, 처벌내용 → 성문의 법률에 규정 · 목적: 국가형벌권 확장과 자의적인 행사를 막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
20C 이후	·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 “법률만 있으면 범죄도 있고 형벌도 있다.” -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규정	· 헌법 제12조 ①항 · 형법 제1조 ①항
내용	·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법관이 적용한 형벌에 관한 법은 오직 성문의 법률이 적용 → 불문법, 관습법은 형사 범죄에 적용 불가 · 명확성의 원칙: 금지되는 행위, 형벌의 내용을 분명히 명확하게 해야 한다.(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 ·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법조문의 문장과 표형대로 엄격한 해석(자의적인 해석 금지) - 민법, 행정법은 가능하나 형법은 불가 - 단, 피고인에게 유리 또는 형을 경감 할 수 있는 유추해석은 허용 가능 ·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 소급 불가 · 적정성의 원칙: 법률의 내용 자체가 불합리하거나 또는 부정 해석서는 안 된다. 범죄와 형벌사이에도 적정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범죄의 내용과 그것에 따르는 형량은 사회 관념상 합리적인 수준 유지

2. 범죄에 대한 이해

(1)범죄

① 의의: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침해, 사회 안전과 질서를 문란케하는 → 반사회적 행위

②범죄의 주체: 사람

객체: 행위의 대상인 사람 또는 물건

범죄의 의미	· 이익침해 → 반규범적, 반사회적 행위	
범죄성립 요건	구성요건 해당성	그 행위가 형법에서 범죄로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건에 해당 되어야 함 (예) 타인의 재물을 훔친자.....
	위법성	· 전체 법질서로부터 부정적인 행위라는 판단 이 가능해야 함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행위(형법20조) ① 법령에 의한 행위 ② 업무로 인한 행위 ③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아니한 행위는 별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형법21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위한 행위
긴급피난(형법22조) 큰 법익을 위해 작은 법익을 침해한 경우 자구행위(형법23조) 법정 절차에 의해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 한 경우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		
피해자의 승낙(형법24조) 처분 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 ◆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차이: 사람에게 의 해서만 일어나는 경우는 정당방위이고 그 외 의 동물, 사물 등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는 긴급 피난에 해당		
책임성	· 행위자가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만한 책임 이 있어야 함: <u>비난 가능성이 있는나?</u> · 책임성 조각의 사유: 형사미성년자(만14세 미만), 심신상실자, 강요된 행위	
범죄의 종류	·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 살인, 폭행, 강 도, 절도 ·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 방화, 문서 및 화폐 위조, 도박 ·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 내란, 뇌물, 공 무 집행방해	

3. 형벌에 대한 이해

- (1) 의의: 범죄인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가하는 제
재
(2) 목적: 응보 + 교화
(3) 형벌의 종류

생명형	사형	생명 박탈형, 법정최고형
자유형	징역	30일 이상 교도소 구금, 노역부과
	금고	30일 이상 교도소 구금, 노역 없음
	구류	30일 미만 교도소 구금, 노역 없음
명예형	자격 상실	·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 일정 기간 자격이 상실 되는 것
	자격 정지	위와 같은 자격을 일정기간(1년~15년)정지시키는 것
재산형	벌금	50,000원 이상
	과료	2,000원~50,000원 미만(경미한 범죄의 경우) 몰수 범죄행위에 관련, 대가로 획득한 것을 국가에 귀속

- (2) 새로운 형사 정책 수단 - 형벌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보호관찰제도	일정 의무 사항의 준수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 하되 관찰기관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
사회봉사명령	무보수로 일전기간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명령하는 것
수강명령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

(3)형의 적용

“갑이 을을 살해하고 자수하였다.”

- ◇ 갑의 행위: 형법 제250조①항 살인죄의 규정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①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법정형**(형법 조항에 각 범죄에 대하여 규정 되어 있는 형)
②법원이 유기 징역을 선택하여 10년형이 된다고 판단 후 선택하면 10년 형을 **처단형**(형법에 규정 된 내용에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정하는 형)
③자수 등을 감안하여 형을 반으로 줄여 선고하면 **선고형**(구체적으로 해당범죄에 적합한 형을 선고내린 형)

4. 재판의 원칙과 절차

(1)사법의 의 의미

의 미	무엇이 법인가를 해석, 판단 →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 →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호
행정권과 사법권	· 행정권: 법의 내용 실현 - 적극적 능동적 국가 작용 · 사법권: 법 질서 유지 - 소극적, 수동적 국가 작용

(2)사법권의 독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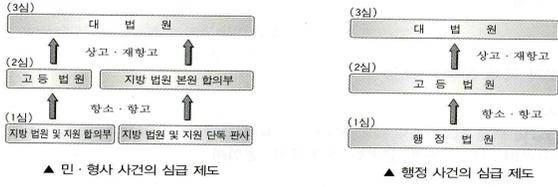
- ① 의의: 타기관의 영향을 배제하고 독립된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하자는 것
② 목적: 공정한 재판을 통해 - 국민의 기본권 보장
③ 내용: 법원의 독립, 법관의 독립
④ 사법권 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자격, 임기, 임명, 신분보장

(3)삼급제도

의 미	①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을 위하여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②원칙적으로 3심제이나 선거 재판은 단심제이고 군사 재판은 단심제가 가능 ◇목적 : 법관의 오판 가능성 인정 → 공정한 재판을 통한 피의자의 인권 보호삼급제의 의미재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함→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함
운 영	· 3심제: 원칙적으로 3심제 채택 - 민사, 형사, 행정재판 모두 적용 · 2심제: 선거재판(지방의원, 기초자치단체장), 특허재판 · 단심제: 선거재판(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
상소제도	· 항소: 1심판결 불복 2심청구 · 상고: 2심판결 불복 대법원에 3심 청구 · 항고: 1심 법원의 결정, 명령에 불복 상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 재항고: 2심법원의 결정, 명령에 불복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 하는 것

<심급제도의 종류>

구분	내용
항소	1심판결에 불복하여 2심에 소를 제기 하는 것
상고	2심판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기 하는 것
항고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 명령에 불복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기 하는 것
재항고	법원의 명령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2심제	특허재판, 지방의회 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재판
단심제	비상계엄 군사재판, 국회의원, 시, 도지사 선거재판



- ◆선거재판: 당선무효, 선거무효 - 대법원(단심제)
- ◆배심원제도: 사실심 - 사실확정→배심원제(전원일치12인,6인제):
 시민의 법률 참여제
 법률심 - 법관이 법률 적용

(3)재판의 목적과 원칙

- ① 목적: 정의 실현, 기본권 보장, 사회질서 유지
- ② 원칙:
 - ◇공개재판주의 -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원칙
 → 다만, 심리의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 가능
 ≡비공개 사유 : 국가 안전 보장 또는 안녕 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을 해할 경우
 - ◇증거재판주의 - 재판의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는 원칙
 → 법관의 자의에 의해서나 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을 할 수 없음

5. 형사사건과 형사재판

의미	국가가 공적 힘을 동원하여 범인에게 강제적 제재를 가하는 사건
관련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소: 특정의 범죄에 관한 그 범위를 확정 -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요구 하는 것 : 우리형법에서는 검사만이 공소를 할 수 있다.(기소 독점주의) · 고소: 범죄의 피해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수사 기관에 대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구 하는 것 · 고발: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 하는 것

- ◆형사소송
 범죄의 발생→피의자에 대한 임의 수사 →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적부심 신청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경우판사에게 심사 받는 것) → 검사의 피의자 기소(기소독점주의) →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심리개시 → 보석신청(법원에 보증금 납부 조건으로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것) → 피의자 신문, 증거조사 → 검사 의견진술 및 구형 → 변호인 피고인 최후 진술 → 판결 → 불복 시 항소, 상고
- ◆형사재판: 원고 - 검사 피의자 - 피고인
- ◆민사재판: 원고 - 피해자 가해자 - 피고

<형의 선고>

무죄선고	피고인의 석방 -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가 정당한 보상 청구 가능
실형선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도소에서 집행, 형 집행기간 중 가석방 가능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하면서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가 그 기간에 다른 범죄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실효시켜 실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
선고유예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면소 된 것으로 간주

6. 민사사건과 민사재판

◇민사사건과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

민사사건의 의미	개인 간의 채권·채무관계나 부동산 관계 등의 사건
민사소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간의 문제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 민사 재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소장과 원고 진술서를 보냄으로써 시작 됨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	스스로의 물리력으로 권리를 실현하려는 것을 금지 함 → 단 매우 긴급한 사정으로 공권력의 보호를 구할 여유가 없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 ◆ 절차: 피해자(원고)와 가해자(피고)의 발생 → 피해자의 소송제기 → 피고에게 통지 → 재판(변론)기일의 지정 및 소환 → 주장과 답변 및 항변 → 사실입증 → 판결이 선고 → 1심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 →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고

10. 국제법과 국제분쟁

1. 국제법에 대한 이해

(1)국제법과 국제사회

국제법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를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된 국제사회의 법 · 규율대상: 국제사회 및 국제조직, 국가 간의 관계, 국제조직과 개인 간의 관계
국제사회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력한 중앙정부의 부재 · 자국의 이익추구 · 힘의 논리가 지배 · 갈등과 충돌, 대화와 협력이 공존하는 사회

(2)국내법과 국제법의 비교

구분	국내법	국제법
제정주체	국민대표기관인 입법부	국가간의 협상이나 합의
집행기관	행정부→효율적 집행	무정부→강력한 집행기관
구속력	강함(사법부)	약함(국제사법재판소)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함	

2. 국제법의 법원과 최근의 국제법 동향

(1)법원

조약	· 국제법 주체 간에 명시된 합의를 통해 문서 형식 으로 제정된 것 예)한미방위조약 · 조약체결권자: 대통령 · 효력: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만 구속
국제관습법	· 국제사회에서 장기간 관행으로 인정되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법 예)외교관의 면책특권,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등 · 국가 간의 묵시적 합의로 성립됨,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구속
법의 일반원칙	여러 나라의 국내법상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원칙(여러 문명국가에서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

(2)최근의 국제법 동향

경제분야의 중요성 부각	국제경제법, 국제거래법 등장
새로운 분야 등장	국제인권법, 해양법, 우주항공법, 지역국제법 등
국가역할 축소	비정부기구,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 개인의 역할 증대

11. 법 생활의 발전과 과제

1. 법의식

(1)우리나라와 외국의 법문화 비교

대한민국	서구사회
권위적인 법 제정과 적용 → 부정적 태도 형성	시민의 자유와 권리 중시 → 긍정적 태도 함양
통치와 의무행의 강제수단으로 인식	시민교육 차원에서 체계적인 법 교육 실시
사회정의 및 공공복리 증진	시민의 투철한 권리 의식 함양

(2)법률구조제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 제도 - 무료법률상담, 소송비용 대여, 변호사 선임을 통한 소송 대행 등 : 재판이 끝난 뒤 5년 이내 경제적 회복을 하면 구조금액 반환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극적 권리가 아니다. -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국민의 법률 복지를 위해 나서는 적극적 권리

◇목적: 국민의 억울한 법적 피해 방지 →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 복지 증진